함께만드는밝은생활공동체



민주화운동공제회

창 립 대 회

일시: 2005년 4월 19일(화)

장소 : 서울YWCA 회관 (명동)

록

민주화운동공제회 창립대회 자료집

창립대회

언론보도

공제회 게시판

창립대회 식순	4
창립선언문	5
인사말 / 축사	6
경과보고	8
정관(안) / 사업 개요 / 창준위 결산보고	12
창립회원 명단	20
창립에 수고하신 분들	23
창립회원 마당	24
창립대회 준비과정	
발기인대회	30
기금마련 전시회	32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5-1 3층 Tel. 02-712-5811(대) Fax. 02-712-5813

창립대회 식순



창립선언문

식 전 행 사

● 열림 비나리

창립총회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창립준비위원장 인사말
- 축 사
- 경과보고
- 총회 임시의장 선출
- 정관안 상정, 토의, 인준
- 창준위 결산 보고
- 기타 안건 상정, 토의
- 임원 선출 인사
- 창립선언문 낭독
- 폐회선언

식후행사

● 나눔 대동굿

민주화운동공제회가 4월혁명 45주년을 맞아 첫발을 내딛는다. 우리는 벅찬 감격과 함께 옷깃을 여미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가 감격스러운 것은 지난해 1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모임을 시작한 이후 1년 4개월만에 오늘의 모습을 갖춰 힘찬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옷 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애쓰다 산화한 민주열시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까닭에 힘든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동지들의 눈물과 땀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이다. 꿈꾸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온 민주동지들은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 공제회의 깃발 아래 모였다. 그 꿈은 민주동지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며 민주화운동 정신의 함양이다. 우리는 '함께 만드는 밝은생활 공동체'를 지향한다. 또한 '한데 어울리는 민주동지들의 한마당'을 만들고자 한다.

오늘 우리는 척박한 땅을 일구어 뜻과 힘을 모아 한 그루 묘목을 심는다. 이 묘목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치고 잎을 피우기 위해서는 어린 나무를 가꾸는 민주동지들의 정성과 사랑이 필수적이다. 또한 물과 햇볕이 필요하다. 물은 국민들의 공제회에 대한 애정이며 햇볕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보살핌이다. 민주공제 회라는 묘목은 이윽고 수만 수십만의 잎들이 무성한 거목으로 자라 커다란 그늘을 이루어 우리들의 쉼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바로 우리 자신들의 노력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다시 한번 신발꾼을 조여 맬 것임을 다짐한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공제회는 3대 목표와 4대 운영원칙, 5대 실천지침을 세우고 이를 내외에 천명한다.

3대 목표 4대 운영원칙 5대 실천지침 1. 밝은생활 공동체 건설 1. 공정성 1. 민주동지들의 회원 가입 확대 2. 경영 및 사업기반 구축 2. 투명성 2. 지역조직 건설 및 확충 3. 민주정신의 함양 발전 3. 전문성 3. 수익사업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 4. 헌신성 4. 적립부담금의 안전 운용 5. 회원 복지를 위한 기반 구축

민주화운동공제회는 이 같은 3대 목표와 4대 운영원칙, 5대 실천지침에 따라 밝은생활 공동체 건설에 매진할 것이다.

2005년 4월 19일 민주화운동공제회 창립 회원 일동



인사말 축사





한데 어울리는 마당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

오늘 4월혁명 마흔다섯 돌을 맞는 뜻깊은 날에 우리 '민주화운동공제회' 가 드디어 창립대회를 갖습니다.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동지들이 한데 어울리는 장을 만들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지들에게 우리 스스로의 상부상조를 통해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을 모아 지난해 1월부터 준비모임을 시작한 지 1년여만의 일입니다.

그간 준비위원회 결성, 기금마련 미술품전시회, 사무실 마련, 발기인대회 를 성공리에 개최한 후 이번 창립대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주화운동공제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설립됩니다. 1960년대에 서 8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3만명 정도를 기초인력으로 하여, 이 분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적극 동참한 분들까지 합하여 약 20만명을 대상으로 회원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민주화운동에 관련한 모든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명실공히 한국민주화운동 동지들의 모집단이자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이 될 것입니다.

민수화운동 동시들의 모십년이사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고유의 자율적 협동조직인 계, 향약, 두레 등 선조들의 지혜를 계승 하여 어려움을 공동으로 극복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고자 합니 다. 또한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라는 신용협동조합의 기본정신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민주화운동공제회가 정식 출범하는 이번 창립대회를 계기로 모두가 함께 '밝은생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 민주화운동공제회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 유 영 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미래에 계승시키는 중요한 사업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많은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 희망의 생활공동체를 목적으로 하는 민주화운동공제회를 창립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시대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시느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사업에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게 된 것은 민주동지들이 간직하고 있는 흔들림 없는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우리 동지들은 독재정권에 의해 갖가지 고초를 겪어 왔고 또 희생당해 왔습니다. 수배, 고문, 해고, 취업제한에 의한 생활상의 고통뿐만 아니라 고문과 투옥생활로 육체와 정신에 남겨진 상처는 아직도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운동 정신과 민주화운동 정신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끌어온 양대 축이라고 늘 이야기해 왔지만, 온몸으로 그 정신을 지켜온 인사들의 삶은 민주정권의 등장에도 그에 걸맞는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과 성취가 국민의 자부심으로 승화된 더욱 성숙한 민주사회는 그 정신을 지켜낸 분들의 현재의 삶이 흠모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야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민주인사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한 공제회의 상부상조 활동은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시키는 중요한 사업임과 동시에, 민주인사의 생활과 복지를 위한 노력이 민주사회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정부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희망의 미래를 만드는 민주화운동공제회의 탄생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제회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 웅



축사

경과보고



'사람사는 세상' 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는 지금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로 을사늑약 100년, 해방 60년, 분단 60년, 한일협정 40년, 6.15공동선언 5년을 맞고 있음에도 지금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교과서까지 날조해 가며 호시탐탐 구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들은 역사의 중심에서 반민중, 반민주 세력에 끊임없이 저항해 왔습니다. 갑오농민전쟁에서의 민초들의 투쟁은 일제하 독립무장투쟁을 거쳐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독재에 대항하여 양심적인 지식인과 청년학생·노동자·농민들의 투쟁이 이어졌고, 전두환·노태우에 맞선 80년 5월 광주항쟁, 87년 6.10항쟁을 비롯한 7, 8, 9월 노동자대투쟁, 88년으로 계속 이어지는 농민 수세·고추투쟁, 청년학생들의 반파시즘, 통일투쟁 등 민중들은 투쟁으로써 이 땅에 민주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변혁의 중심에서 투쟁의 대열에 앞장섰던 우리 민중들의 삶은 매우 고달팠습니다. 이제 우리 민중들의 삶은 우리의 힘에 의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화운동공제회의 결성과 민중투쟁에 함께 했던 동자들의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적 활동은 민중투쟁을 가열차게 해나가는 데 든든한 기반이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민중운동, 변혁운동을 통해 통일을 이루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농민, 빈민을 신자유주의로부터 해방시켜 '사람사는 세상'을 앞당겨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짐해야 할 때입니다.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정 광 훈

2004년 1월 6일 씨앗모임 결성

• 선경식 김경남 문국주 홍성복 등이 모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복지에 관한 대책을 논의한 가운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상부상조를 위한 공제회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제회와 관련한연구를 하기로 합의.

2004년 3월 24일 준비소위 구성

• 두 달여 연구와 논의 결과 유영표 박석률 선경식 유동우 김경남 임상택 최준영 문국주 박용훈 홍성복 노동길 권형택 정민수 배남효 박범준 등 16명이 민주화운동공제회(가칭) 준비소위원회를 구성.

2004년 6월 2일 설립준비위원회 발족

- 2004년 6월 2일(수요일) 오후 6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장에서 김경남 김균식 김기봉 김윤 노동길 문국주 민종덕 박범준 박석률 박성규 박용훈 박재천 박종렬 서동석 선경식 오세구 유영표 유종 순 윤병기 이석표 이인수 임상택 장종택 정명수 정민수 지공(효관) 최윤 최철 한상석 홍성복 등 32명 이 참석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 준비위원장에 유영표 선출.
- 준비위원으로는 총 76명이 참여하고, 운영위원회와 사무처, 그리고 5개 분과위원회 체제로 출범.

2004년 6월 10일 5개 분과위원회 구성

• 법제분과위원장에 길기관변호사, 사업분과위원장과 간사에 김균식과 윤병기, 연구분과위원장과 간사에 박재천과 김기봉, 조직분과위원장과 간사에 유동우와 서동석 김설이 최윤, 홍보분과위원장과 간사에 선경식과 권오걸로 구성.

2004년 7월 22일 확대운영위원회 워크숍

• 서울 흑석동 달마사에서 회원 22명이 모여 김기봉 연구분과 간사의 발제로 회원자격의 기준, 재원, 사업방식의 문제 등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

2004년 9월 22일 후원회 구성

• 강만길 상지대 총장, 김성수 성공회대 총장, 명진 스님, 박형규 목사, 신경림 시인, 이돈명 변호사,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천영세 민노당 원내대표, 한명숙 의원. 한승헌 변호사, 한화갑 민주당 대표, 함세웅 신부

2004년 10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제회 설립 공식화

- 2004년 10월 5일 11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장
- 기사게재 : 연합통신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프레시안 등에 기사 실림



THE PERSON NAMED IN COLUMN TO PERSON NAMED I

경과보고

2004년 10월 25일~30일 기금마련 미술품전시회 개최

참여작가(미협과 민미협 중견작가 공동참여)

강건호 강기융 강연균 강요배 강창렬 강행원 공영석 곽석손 김대중 김명순 김성근 김성희 김순옥 김준권 김지하 김천일 남궁산 노재순 두시영 류충렬 민이식 박미용 박용인 박인호 박일용 박재동 박재현 박창로 서봉남 성민홍 송 용 신범승 신종섭 신현조 안성금 안성용 양재영 우희춘 윤옥순 이경모 이남찬 이두식 이상렬 이영수 이철량 이태길 엄정기 장재운 장태묵 정영남 정호양 조국현 조영덕 지용수 차일만 최광선 최락경 최영훈 하일해 하정민 하철경 홍선웅 황영성 (63명)

기증자

김대중 전 대통령(서예 1점, 친필도자기 1점), 박형규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동양화 1점), 이석현 의원(서양화 1점), 장영달 의원(서양화 1점),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서양화 1점)

- 개회식 참여인원 약 70여 명. 관람객 약 800여 명
- 전시 작품 130여 점. 판매 작품 69점
- 기금조성 금액: 121,310,000원

2004년 12월 9일 발기인대회

- 각 사건·부문·지역의 민주인사와 기존 준비위원 76명 등 약 7백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서울 종로 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민주화운동공제회 발기인대회를 개최.
- 창립총회준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남 김상철 김영준 류태선 박순희 선경식 양길승 유영표 이상익 이영순 이현배 정상모 최윤 최준영 최철 효관 등 16인을 선출. 위원 추가 선임을 창준위에 위임.
- 창준위 위원장단에 위원장 유영표, 부위원장 선경식(홍보위원장 겸임), 이영순(조직강화특위 부위원장 겸임), 최준영(기획위원장 겸임) 선출.
- 사무처장에 홍성복 임명.

2004년 12월 20일 제1차 창준위

• 창준위원으로 농민운동 부문의 정광훈(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선임.

2005년 1월 12일 춘천지역 설명회 겸 신년하례식

• 최윤 창준위원 등 지역 인사 30여 명 참석.

2005년 1월 15일 광주 · 전남지역 간담회

• 유영표 위원장, 선경식 부위원장, 문국주 위원이 이수복 윤한봉 이강 등 지역인사 20여 명과 간담회

2005년 1월 18일 실무소위원회 구성(제3차 창준위)

- 이영순 조직강화특위위원장 선임 추인
- 사업계획안 작성 소위원회 구성

위원장: 김영준, 위원: 김기봉 김윤 이무성 선경식

• 정관안 작성 소위원회 구성

위원장: 길기관 변호사, 위원: 김경남

• 창준위원으로 박준철(전 EYC 총무), 박종혁(고려대 고산회 총무) 선임, 류태선 위원은 1월 5일자로 사임,

2005년 1월 20일 사업자 등록증 교부받음

2005년 2월 15일 창준위 · 조직강화특위 합동연석회의

- 각 위원들이 창립총회 전까지 회원배가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
- 지역·부문 등 단위로 사업설명회 개최, 홍보활동 강화, 시행 가능한 사업을 확정하여 사업을 통한 조직확대 방안 마련키로 결의.

2005년 3월 16일 청주지역 간담회

• 박종혁 조직강화특위 간사, 지역인사 박종희 문성식 정지성 김희식 등과 간담회. 이어서 청주YWCA 신영희 사무총장. 김미경 부장과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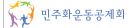
2005년 4월 1일 민주공제회(준) 사무실에서 워크숍

• 창준위원, 조직강화특위위원, 서울지역 조강특위위원 등 20여 명 참석하여, 정관안 및 사업계획 요강, 지역조직 건설방안, 본부 사무기구 구성 방안 등에 대한 토의.

2005년 4월 8일 각 대학 민주동문회 회원들 초청 시업설명회 개최

• 고려대 동국대 명지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인하대 한국외국어대 민주동문회 회원과 한국기독교감리회청년회 등에서 20여 명 참여.

2004년 12월 발기인대회 이후 10차례의 창립준비위원회와 11차례의 조 직강화특별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통해 정관안 작성, 사업계획안 수립, 회원 가입 확충 등 공제회 창립을 위한 기반을 다져옴.



A P

민주화운동궁제회 정관(안)

제1장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민주화운동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제2조(목적)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회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민주화운 동 정신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되,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다
- ② 공제회는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공제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 1.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 사업
- 2. 회원을 위한 복지 · 후생사업
- 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운영
- 4. 사회복지공익사업
- 5. 민주화운동의 계승을 위한 사업
- 6.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 7. 기타 본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사업체의 설립과 투자)

공제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투자할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이 된다.

-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제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 ② 위 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별도로 정 한다.

제7조(가입)

회원은 공제회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및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공제회로부터 각종 급여를 수급할 권리와 공제 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 공제회가 운영하는 각종 복지시 설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한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본인이 납입한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 ③ 회원은 소정의 가입비와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공제회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고지의무)

회원은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자격의 상 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 그 사실 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사망
- 2. 탈퇴
- 3. 제명
- 4. 파산
- 5. 금치산
- 6. 부담금을 6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제명)

①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 1. 공제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회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자
- 3. 공제회의 사업을 방해한 자
- 4. 기타 공제회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한 자
- ②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회 개최일 10일 전 까지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대의 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회원의 제명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이사회는 다음 대의 원회가 열릴 때까지 일시적으로 해당회원의 자격을 정 지시킬 수 있다.
- ④ 자격이 정지된 회원에 대하여 대의원회에서 제명이 결의되면 그 회원은 자격정지를 받은 때 제명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대의원회

제12조(구성과 임기)

- ① 대의원회는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② 대의원의 수는 100인 이내로 하되 회원의 구성과 회원 수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의사결정구조가 되도록 별도 로 정한다.
- ③ 선출직 대의원은 지부에서 선출한다.
- ④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당연직 대의원이 궐위된 경우 즉시 보임하되, 선출직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궐원이 있기까지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정기대의원회)

정기대의원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4조(임시대의원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

하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 3. 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 로 요구한 때
- 4. 대의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 으로 요구할 때
- 5.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15조(소집 및 의결)

- ① 이사장은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회의 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한 소집통지서를 개최 7일 전까지 대의원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회 의결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대의원은 출석대의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권한)
- ① 대의원회는 공제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출.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 도로 정하다
 -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 4. 결산의 승인
- 5.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중대한 채무의 부담
- 6. 이익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 7. 회원의 제명
- 8. 공제회의 해산
- 9. 기타 정관에서 대의원회 이외의 기관에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

제17조(의안의 제출)

대의원은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소집통지서 발송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회원의 참관)

A P

민주화운동궁제회 정관(안)

회원은 대의원회의 3일 전까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의 원회에 참관할 수 있다.

제19조(의결권의 제한)

대의원은 본인과 공제회와의 거래 승인이나, 본인의 징계 에 관한 의결 등의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회의록의 작성)

- ① 대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회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대의 원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대의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21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이사장이 주재한다.

제22조(소집과 의결)

- ① 정기이사회는 매 2월마다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 이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기능)

이사회는 대의원대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대의원회까지 공 제회의 조직과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대한 중요사항을 토 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 결한다.

-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2.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심의
- 3. 대의원회 부의 안건 및 위임된 사항 심의
- 4. 지부 및 사무기구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5. 고문, 지도위원 추대 및 자문위원 위촉
- 6. 부설기관의 설치 및 대표자 승인

- 7. 사업집행에 관한 기본 방침의 결정
- 8. 계약의 체결
- 9. 대의원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
- 10. 기타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24조(의결권 제한)

이사가 공제회와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사항에 대해 당사자 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장 임 원

제25조(임원의 구성)

공제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 단, 이사장 1인 및 3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 2. 감사 2인

제26조(임원의 책임)

- ① 임원은 정관, 규정 및 대의원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공제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공제회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③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 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공제회 또는 개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 ④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회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과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는 당해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않는다.
- ⑤ 제2항, 제3항 및 4항의 구상권 행사는 이사장·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감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임원 전원 에 대하여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 가 행한다.
- 제27조(이사장의 직무)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가 복수일 경우에는 상임이사 간에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제28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 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 감사
-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
- 3.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사회, 대의원회 및 주무부처에 보고한다.

제30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 을 가진다.

- 1.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
- 2.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제31조(감사의 대표권)

그레이스 사기 가시가

공제회와 이사 간의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공제회를 대표한다.

제32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 산한다.
-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설립 당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차년 도 정기대의원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3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 경우에 궐위된 날로부 터 2월 이내에 보선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여기간으로 한다.

제34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②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는 감사가 될 수 없다.

제35조(임원의 해임)

- ① 임원이 제10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 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이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공제회의 재산에 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대의원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제재)

- ① 이사회는 임원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써 정적 또는 징계할 수 있다.
 - 1. 법령 또는 정관이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
 - 2. 공제회에 대한 채무를 6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때
- ② 제1항의 정직을 선언한 이후 이사장 또는 그의 직무대 행자는 당해 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대의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정직 기간은 3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제37조(고문 및 지도위원)

이사회는 공제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 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고문과 지도위 원으로 추대함 수 있다.

제38조(자문위원)

공제회는 경영·기금운용·법률·세무·회계·투자·사 업개발·기타 특수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



A P

민주화운동공제회 정관(안)

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장 사무기구

제39조(설치와 구성)

- ①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적 집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사무기구의 편제와 임무,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부설기관

제40조(부설기관)

공제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특정한 사업목적을 수행 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설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운영원칙)

부설기관은 공제회의 정관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정관을 가질 수 있으며 자율성을 갖는다.

제42조(부설기관의 성립조건)

- ① 각 부설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일정 수 이상의 회원 확보
 - 2. 재정의 독립
 - 3. 공제회의 운영비용의 일정한 분담금 납부
- ② 전항 제1호와 제 3호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43조(재산의 구성)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부담금, 각종 기부금 또는 지원금 및 각종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4조(가입비)

회원은 가입신청 시 1만 원 이상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하나

제45조(부담금)

- ① 회원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부담금은 구좌 수별로 하되, 1구좌 당 5,000원(월 기준) ㅇ로 하다
- ③ 회원은 월 최저 1구좌부터 최대 100구좌까지 불입할 수 있다.
- ④ 부담금의 납부 방법은 월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부담금 납부의 특례)

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 간 일정한 한도에서 부담금의 납부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회계의 구분)

- ①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목적사업회계는 고유 목적사업에 관한 수입·지출을 포 괄한다.
- ③ 수익사업회계는 수익사업에 관한 수입·지출을 포괄 하다

제49조(수익사업회계 운영자금)

- ① 수익사업회계 운영자금은 목적사업회계 출자금과 기채 로 한다.
- ② 출자와 기채의 방법과 한도액은 회계연도 이사회의 결 정을 거쳐 결정한다.

제50조(사무관리비)

공제회의 목적사업회계 사무관리비는 당해연도 수익사업 회계 기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51조(임원의 보수 등)

- ① 이사장, 상임이사 및 상근감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비상근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손익처리)

- ① 수익사업회계의 결산상 이익잉여금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가쳐 목적사업회계에 기부 처리할 수 있다.
- ② 목적사업회계 결산결과 이익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그일부를 급부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적립 비율은 따로 정한다.

제53조(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전까지 수립, 편성하여야 한다.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고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결산공고)

- ①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차대조표 등을 회원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 고한다.
- ② 회원에게는 부담금 납입 및 급여금의 내역 등을 알려야 하다

제55조(회계사무규정)

공제회의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56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7조(해산)

- ① 공제회는 재적 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의결로 해산한다.
- ② 공제회는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해산한다.

제58조(잔여재산)

공제회가 해산하는 경우 민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잔여재산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가 의결하는 민주화운동 관련단체에 기부한다.

제59조(정치활동의 금지)

-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회계책임자 가 될 수 없다.
- ③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에 취임한 경 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제60조(위임규정)

이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공제회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하는 즉시 효력을 발 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민주화운동공제회 창립준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는 공제회가 이 정관에 의하 여 행한 것으로 가주한다.



THE PARTY OF THE P

사업 개요

본 공제회는 정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복지후생사업과 수익사업을 시행한다.

1. 복지후생사업

- 급여사업: 생활안정 급여, 사망 급여, 탈퇴·해약 급여
- 신용사업: 부담금 적립, 재해 대여, 긴급의료비 및 학자금 대여
- 회원복지사업: 경조금 지급, 재해위로금 지급, 노후생활 안정자금 지원, 복지 및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 의료네트워크를 통한 의료서비스, 법률네트워크를 통한 법률서비스

2. 수익사업

1) 원 칙

- 민주공제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한다
-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한다
- 투명 경영, 투명 회계
- 회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2) 사업방식

- 직접방식 : 공제회가 직접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도적으로 경영 참가
- 간접방식: 기존 업체와 협력관계 수립, 업무 협조 계약서 작성.

사업제안서 제출→검토→협의→업무협조(대행) 계약서 작성→시행(공제회와 사업 대상자간 계약 체결–하청)

3) 사업전담 부서

- 사업운영팀(또는 본부) : 실무 전담(신용사업, 수익사업, 기금마련사업). 사업제안서 접수 및 타 당성 검토. 필요할 경우 사업별 TF팀 구성 활용
- 사업자문위 : 일부 이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 사업 아이템 개발 및 추진

4) 사업절차

- 모든 사업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
- 사업평가위원회 구성 : 1단계 사업성 평가 → 2단계 사업 성과 평가

5) 우선 추진사업

- 연구용역사업 : 자본금 없이 내부 인력 활용 가능
- 영업 대행 또는 중개영업 : 자금 투입 불필요. 공제회 인적 네트워크 활용

민주화운동공제회 창립준비과정 관리운영 보고 (2004년 6월~2005년 4월 15일)

1. 수지명세서 (단위 : 원)

▶ 총수입 326,410,050

단기차입금	25,000,000	그림매출	259,100,000
회워가인비	28 020 050	회워적립부담금	14 290 000

▶ 총지출 273.359.074

•				
98,270,000	그림상계처리	2,000,000	차입금상환	25,000,000
30,000,000	전화보증금	60,000	비품	4,462,830
400,000	위원장단활동비	6,000,000	급여	27,250,000
9,385,000	복리후생비	2,944,160	여비교통비	4,631,929
3,724,190	통신비	6,574,756	수도광열비	1,221,160
100,000	운반비	4,848,000	임차료	7,685,000
5,262,500	회의비	7,448,590	사무용품비	777,870
1,334,950	지급수수료	1,070,239	외주가공비	18,128,000
3,696,900	잡비	506,000	용비재이	577,000
	30,000,000 400,000 9,385,000 3,724,190 100,000 5,262,500 1,334,950	30,000,000 전화보증금 400,000 위원장단활동비 9,385,000 복리후생비 3,724,190 통신비 100,000 운반비 5,262,500 회의비 1,334,950 지급수수료	30,000,000 전화보증금 60,000 400,000 위원장단활동비 6,000,000 9,385,000 복리후생비 2,944,160 3,724,190 통신비 6,574,756 100,000 운반비 4,848,000 5,262,500 회의비 7,448,590 1,334,950 지급수수료 1,070,239	30,000,000 전화보증금 60,000 비품 400,000 위원장단활동비 6,000,000 급여 9,385,000 복리후생비 2,944,160 여비교통비 3,724,190 통신비 6,574,756 수도광열비 100,000 운반비 4,848,000 임차료 5,262,500 회의비 7,448,590 사무용품비 1,334,950 지급수수료 1,070,239 외주가공비

▶ 잔액 53,050,976

현금잔액 10,740,926 회원가입비 28,020,050 적립부담금 14,290,000

2. 자산상황 (단위 : 원)

- ▶ 총자산 (운영자금+지불준비금) 118,118,976
- 운영자금 103,828,976

현금잔액 10,740,926 회원가입비 28,020,050 건물임차보증금외 30,060,000 그림보유(미판매 40점) 35,000,000 (추정)

• 지불준비금 14,290,000 (회원적립부담금)

3. 관리운영 주요내용

- 1) 위원장단 기채 2,500만원 (2004년 6월, 9월)
-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 전화, 회의실 지원, 효율적인 경비관리
- 3) 기금마련전시회 개최 : 수익금 121,300,000원. 차입금 상환, 독립사무실 임대, 현재까지의 운영자금 활용. 현재 10,740,000원 잔여금
- 4) 운영자금으로 활용가능한 가입비는 보존상태
- 5) 현재 회원적립부담금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금액은 적으나, 인당 월평균 2만원 정도로 연평균 1,500명 회원 추정시 2005년도 270,000,000원 수입 예상



THE PARTY OF THE P

창립회원 명단

발기인 명 단 강경수 강기룡 강기철 강성용 강세형 강영원 강웅원 강일근 강일성 강창일 강치원 강홍구 강희경 고갑희 고광진 고민영 고순호 고유문 고재득 고진화 박춘학 고춘남 고한석 공광규 공종우 곽해곤 권만학 권성이 권순갑 권승오 권양택 권오걸 권오광 권오덕 권용호 권태정 권현안 권형택 권호경 권희도 금동일 금영균 길기관 길만수 김경남 김경림 김경복 김경선 김경윤 김경희 김경희 김광모 김광수 김광일 김광해 김교석 김구현 김규진 김균식 김근태 김금동 김기봉 김기정 김기홍 김기흠 김기수 김길수 김금수 김낙중 김남표 김남호 김대웅 김대중 김동수 김동윤 김동주 김동진 김동형 김두희 김명원 김무길 김병인 김봉준 김부섭 김상곤 김상근 김상현 김상호 김서중 김석태 김설이 김성국 김성수 김성훈 김성희 김소연 김순이 김승준 김승호 김승환 김양래 김연관 김영문 김영민 김영수 김영일 김영준 김영준 김영준 김영준 김옥선 김용남 김용수 김용필 김우경 김원웅 김월순 김유국 김윤호 김인섭 김인수 김 일 김장곤 김장현 김재규 김재위 김재호 김재홍 김정길 김정범 김정훈 김종대 김종배 김종철 김종택 김종현 김종세 김주언 김준묵 김준식 김준연 김준탁 김지현 김 진 김 진 김진구 김진석 김진태 김진호 김창규 김창식 김천안 김철규 김쾌상 김태문 김태진 김태진 김태현 김태호 김태홍 김택환 김학기 김학민 김한성 김 현 김현채 김형배 김형태 김홍민 김홍신 김홍일 김후식 김희욱 김희택 나상기 나혜원 나환철 남광우 남근우 남기원 남상헌 남윤인순 남철희 노병관 노병구 노병도 노웅희 노태구 노회찬 도지호 도종환 류갑종 류충렬 류태선 림구호 마봉녀 목영대 목정래 문경식 문국주 문영희 민병남 민완기 민을식 민종덕 박거웅 박계동 박광순 박규웅 박기래 박노성 박노희 박동환 박명규 박명숙 박몽구 박범준 박범진 박병규 박병섭 박병준 박부권 박상언 박석률 박석무 박성룡 박수원 박순남 박순희 박승옥 박 실 박양수 박영선 박영순 박용안 박용현 박우섭 박원순 박육남 박윤영 박인균 박재도 박재무 박재순 박재익 박재천 박정기 박정훈 박종렬 박종률 박종민 박준철 박중인 박창기 박창배 박창영 박철수 박철우 박형석 박혜숙 박호성 박홍렬 박홍용 박효경 배석범 배선수 배손근 배수현 배옥명 배은심 배종열 백경진 백계문 백남운 백락준 변영희 변인식 변정섭 변태희 부윤경 서기영 서동석 서상섭 서원석 서유상 서정기 서주원 서중석 서향아 서헌성 서호석 서희종 석인희 선경식 선병렬 선호균 선채규 설동일 성수용 성유보 성임수 성해용 소병훈 손선례 손승룡 손예철 손주갑 손학규 손흥수 송경숙 송기욱 송병춘 송복심 송운학 송윤호 송인갑 송인문 송인창 송재규 송효익 신광영 신동운 신삼석 신순애 신영명 신운정 신정재 신정철 신철영 신태근 심연식 심윤남 심재권 심재식 심진구 안 건 안경률 안병원 안병욱 안상은 안성금 안양로 안용무 안재성 안재환 안종건 안진오 안창도 안창호 안 풍 양경숙 양관수 양규선 양금식 양기운 양길승 양민호 양은모 양재덕 양창우 양춘승 양태근 양태열 양홍영 양희수 양희철 여익구 염무웅 오경렬 오세구 오수열 오신택 오영탁 오용록 오정묵 오찬호 오충일

발기인 명 단 용상원 우재일 원종위 원혜영 원희룡 유경균 유경석 유경선 유계선(도현) 유기홍 유남선 유병수 유병제 유상덕 유승희 유시춘 유영래 유영표 유옥순 유진권 유진숙 유초하 유해우(동우) 유행철 유홍준 육봉수 윤근창 윤금순 윤명선 윤문병 윤미애 윤병기 윤봉수 윤석인 윤선구 윤성용 윤순녀 윤영미 윤여연 윤영전 윤옥식 윤용병 윤원석 윤중만 윤재걸 윤재근 윤준태 윤청자 윤혜숙 윤호상 윤활식 윤후상 이강옥 이경기 이경선 이경숙 이경숙 이경은 이경진 이광택 이광호 이광희 이교정 이기림 이기연 이기창 이기헌 이길재 이대용 이동섭 이동진 이두수 이락호 이래경 이명곤 이명복 이명순 이명식 이명심 이명준 이무성 이문국 이문옥 이미명 이미자 이병호 이복례 이봉우 이부영 이상덕 이상문 이상림 이상원 이상익 이상정 이상현 이선주 이성현 이성대 이성수 이소선 이수길 이숙희 이순금 이승숙 이승정 이승철 이승철 이시영 이시은 이영록 이영순 이영순 이영진 이영장 이영춘 이영태 이영호 이영희 이옥형 이완규 이용성 이우재 이우회 이운형 이원보 이원섭 이원영 이윤선 이윤종 이은영 이의관 이익균 이인수 이일재 이일호 이자현 이장우 이재국 이재명 이재수 이재옥 이재학 이적(기석) 이 정 이정미 이정식 이정열 이정화 이정희 이종구 이종도 이종범 이종산 이종수 이정철 이정철 이준형 이창복 이 철 이총각 이춘문 이충렬 이태헌 이태희 이택승 이한주 이해찬 이해학 이현배 이현주 이형원 이홍범 이화영 인창원 임기택 임동규 임봉재 임삼진 임성윤 임영희 임옥상 임왕택 임재경 임재수 임종율(효림) 임진택 임춘식 임헌영 임현재 임현진 임호빈 임홍락 장기표 장맹환 장명숙 장미화 장병윤 장승학 장영달 장원택 장윤환 장을규 장종택 전병용 전순복 전순옥 전용호 전태삼 전현철 정관수 정광채(효관) 정광훈 정금채 정기남 정기환 정덕수 정대화 정동영 정동익 정동진 정동화 정만기 정맹희 정명섭 정민영(벽우) 정병문 정병주 정봉희 정상모 정석구 정선순 정선진 정순규 정영애 정영철 정영훈 정윤광 정이순 정인숙 정재돈 정재룡 정재욱 정정휴 정종선 정찬용 정창렬 정태석 정한섭 정해숙 정해일 정현백 정현철 정화영 정환춘 조경남 조경수 조경순 조금분 조문환 조복형 조봉순 조상호 조성두 조성범 조성숙 조성우 조성희 조수자 조양진 조영석 조영숙 조영욱 조영표 조영희 조용웅 조윤익 조인호 조일성 조재구 조재도 조종운 조창균 조창현 조필규 조회환 조흥식 종 림 주소연 주현준 지경복 진선자 차귀녀 차성환 차정인 차흥만 채운병 채종화 천대원 천희상 최갑수 최경환 최광웅 최국태 최권행 최동전 최동화 최명의 최미희 최민화 최병두 최병수 최상택 최순영 최양근 최연진 최 열 최영찬 최용현 최우석 최 윤 최인창 최정순 최정임 최정환 최준영 최 철 최태열 최현미 최 형 최형주 최홍근 최회원 표연성(표준오) 하광윤 한경남 한덕승 한덕희 한명숙 한상석 한상준 한성만 한종범 한준수 함세웅 함지호 허도학 허 영 허인규 허정행 허진수 허태원 현무환 호인수 홍성복 홍순권 홍일선 홍재웅 홍학기 황광석 황규을 황말희 황상익 황승용 황의수 황인성 황일태 황지우 황철식 황태진



창립회원 명단



강경문 강동규 강동균 강동례 강명자 강명은 강병기 강우영 강은정 강재석 강창덕 강치원 강태진 고영하 고재현 고한순 공계진 곽경양 곽복률 곽분이 곽선숙 곽순복 곽일훈 구창완 구충서 권낙기 권영근 권영기 권영숙 권영자 권오성 권진관 권찬동 권처흥 권혁철 금옥채 김경택 김광중 김국진 김대호 김덕균 김덕현 김동식 김동완 김동훈 김두형 김문수 김민영 김봉순 김봉환 김분겸 김상곤 김상균 김상철 김석호 김성일 김성진 김성태 김성태 김세균 김세진 김순이 김승국 김승균 김연심 김연자 김영고 김영기 김영미 김영주 김영중 김영철 김옥진 김용란 김용석 김용정 김용현 김우태 김 윤 김은혜 김익중 김인호 김장덕 김재명 김종철 김주철 김준기 김준용 김준희 김중보 김지영 김진석 김 찬 김찬훈 김창수 김천우 김 철 김철형 김충환 김태희 김판수 김판태 김학배 김현숙 김현순 김현오 김현옥 김형기 김형기 김효순 김희식 김희은 나도영 남기수 남상덕 남석하 남영진 노금순 노동진 노정상 노주현 노진민 노향래 문갑수 문병수 문선명 문성식 문성현 문성훈 문팔괘 박경룡 박경순 박경이 박남수 박만호 박문숙 박문숙 박범찬 박상도 박상일 박상호 박선오 박성규 박성원 박성하 박순이 박순애 박승현 박승환 박영대 박영욱 박영주 박용수 박용훈 박원철 박원표 박인목 박재영 박재환 박종덕 박종문 박종혁 박종현 박종희 박주영 박준호 박중기 박진수 박찬성 박태준 박해권 박홍석 반지태 배노연 배설남 배춘실 배태선 백승룡 백영민 백유성 백찬홍 변광순 변한식 서병철 서상권 서성교 서창석 서태원 석영철 성낙인 성재도 성환돈 소기화 손규호 손석형 손선화 손중양 송무호 송재덕 송재석 송태규 송호순 송희자 신대균 신용봉 신인령 신상진 신종진 신철승 신현태 신혜숙 심상정 심지연 안성주 안숙경 안순애 안주리 안창남 양석우 양영자 양재경 양화수 엄용걸 엄주웅 오균현 오봉균 오성숙 오세제 오세현 오승용 오영기 우영제 오요한 오용권 오인협 원기준 원용희 유대기 유인현 유상학 유왕선 유재욱 유화청 유희경 유희락 윤광기 윤연자 윤영묵 윤영상 윤청자 윤택상 이갑진 이강익 이경애 이경재 이광호 이광희 이규의 이규현 이근호 이기동 이명자 이미혜 이민철 이범구 이범증 이병하 이병학 이부섭 이상도 이상배 이상술 이상협 이성효 이송준 이순신 이승용 이승재 이영자 이영환 이용권 이용구 이용선 이용신 이원아 이원재 이윤정 이인복 이인영 이 정 이정섭 이정수 이정우 이정희 이종대 이종엽 이종원 이주환 이준영 이준호 이지연 이진수 이진호 이찬수 이창호 이풍우 이필남 이헌수 이혜숙 이흥만 이흥석 이희선 인병문 임경철 임금명 임명휘 임병언 임상택 임찬영 임춘원 장광수 장남수 장두환 장미화 장성규 장성룡 장성효 장세룡 장원영 장윤경 장정임 장태원 장현자 전대열 전무배 전병생 전재주 전창현 정경연 정구원 정동화 정명자 정병석 정성기 정성희 정수일 정숙경 정영례 장영택 장 휘 정종근 정지성 정진옥 정찬균 정채진 정춘목 정춘숙 정혁기 정혜란 정호성 정환수 조남근 조명래 조미순 조순형 조원기 조원석 조재윤 조준호 조태원 조현국 조현숙 주기자 주대환 주소연 주영길 지정환 진광철 진두환 진병태 진영규 천영세 최동식 최상천 최연례 최영민 최영철 최이기 최이수 최인규 최정님 최찬규 최청수 최필호 탁무권 하성기 한상근 함상근 함종호 허병섭 허연도 허정도 현윤실 홍순우 황규식 황병호 황선건 황선진 황 용 황종규 황현승 (2005년 4월 15일 현재)

민주화운동공제회 후원회

강만길 김성수 명진 박형규 신경림 이돈명 이부영 천영세 한명숙 한승헌 한화갑 함세웅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 유영표

부위원장: 선경식 홍보위원장, 이영순 조강특위위원장, 최준영 기획위원장

위원 : 김경남 김영준 박순희 박종혁 박준철 양길승 이상익 이현배 정광훈 정동화 정상모 최윤 최철 효관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이영순위원장 권오걸 권형택 김균식 김동수 김병국 문국주 문성식 박몽구 박성하 박종희 배설남 변인식 서동석 송세언 안재환 오세제 유동우 윤병기 이교정 이동진 이영진 이인수 임영희 정인숙 정재돈 차성환 최 철 한상석 허진수 홍성복 〈간사〉박종혁

홍보위원회

선경식위원장 박몽구 장종택 〈간사〉권오걸

정관(안)작성 실무소위원회

길기관위원장 김경남 박재천

사업계획(안)작성 실무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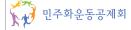
김영준위원장 김기봉 김윤 선경식 이무성 홍성복

미술품전시 특별위원회

김용태위원장 권오걸 김경남 김상철 문국주 서동석 선경식 유영표 이인수 홍성복 〈간사〉임영희 윤병기

사무처

홍성복 권희경 이홍범 이정림 〈간사〉홍문표



창립회원 마당



민<u>족통일의 그날까지</u> 상부상조하는 조직으로



이**상원** (5.18 민주화 유공자, 미국연방 공무원)

하들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을 하거나 독재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설은 속설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현실이 되어 이곳 저곳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는 데 그 슬픔이 있습니다.

제게도 일제시절 고창고보를 다니시다 광주학생의거와 관련한 학내문제로 제적당하시고 어렵게 살다 가신 국가가 알아주지 않는 독립운동을 하신 외조부님이 계십니다. 또 제 큰형 친구이자 집안 아저씨뻘 되는 덕원(德元) 스님은 속명이 이범구(74학 번, 서울대 경제학과)로 유신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1980년, 대학 1학년의 어린 모습으로 전두환 군부에 의해 불법적인 연행과 고문 그리고 감금으로 급조된 저의 운동권 이력은 한국 사회의 3류 인생의 서막을 알려주기에 충분했던 서글픈 기억도 있습니다.

1988년, 도저히 그런 모습으론 살 수 없어 어렵게 단수여권을 손에 쥐고 유학차 도미 하여 지금은 미국연방공무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한답시고 한국 군사 정권의 종말도, 군사정권에 야합한 문민정권의 탄생과 그 종말도, 그리고 비록 국가 부도 일보직전이라는 IMF위기의 처절함 속에서나마 출발한 민주정권의 시작도 지구의 반대편에서 풍문으로 설레는 마음만 가지고 접해야 했습니다.

그 동안 한국이 어느덧 인터넷 선진국으로 자리를 잡아 온라인을 통하여 참여정부가 탄생하는 모습은 생생하게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전에 그 온라인상에서 '민주 화운동공제회'를 조직한다는 소식은 제게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전두환의 진정한 처벌이 없는 5.18 민주화 유공자란 아무 의미가 없다며 보상 신청을 고사하신 동지들이며, 아예 유공자라는 칭호조차 바란 바 없다며 선비지조를 보이신 선배…

언제부터인가 제가 진정한 민주화 세력이었다면 힘들고 가난한 동지들의 모습을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해오던 차였습니다. 제가 '민주화운동공제회'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데는 단 일초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주화운동공제회' 가 잘 운영되어 고생했던 동지들이 양질의 삶을 누리는 데 일조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상부상조하여 민족이 재통일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맑은 피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민주화운동공제회' 를 통해 우리의 존엄성을 슬기롭게 유지합시다.

마음은 언제나 민주화운동공제회에 있습니다



정병석 (중국 연변 장백산 두레마을 사장)

제가 공제회를 알게 된 것은 지난해 가을에 이곳 연변을 다녀가신 이영순 누님을 통해서입니다. 평소에 공제회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차에 지난 2월 잠시 귀국하여 정식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라도 장흥이 고향이며 이제 오십을 갓 넘긴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스무 살 무렵 70년대 초, 서울에 올라와 동대문 숭인동 꼭대기에 자취방 얻어놓고 바로 아래 평화시장에서 한달에 3500원 받고 재단보조 일자리를 구해서 객지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전태일이 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였지만 훗날 내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현재 여기 연변에서 통일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어려운 시절의 영향이 아닌가 합니다. 그 후 목포에서 신학공부를 한 후에 초기의 기독청년혐의회(EYC)를 목포에서 만들어가게 됩니다.

80년 광주에서 가까운 영광에서 전남 농대를 졸업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길산농장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후배들이 5.18 횃불데모를 준비하게 되고. 당시 참여했던 몇몇은 먼저 망월동에 자리를 잡고 우리들을 기다린답니다.

그 후에 대전 공단의 동양강철에서 본격적인 노동조합 일들을 하게 되었고 민주노총 의 전신 전노협 건설과 민주노총 건설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었습니다.

IMF 이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곳 넓은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연변두레를 책임지고 통일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아이들이 둘인데 첫아이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입니다. 이름이 정민주와 정평화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첫아이가 휴학을 하게 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공제회가 진즉에 있었더라면 학자금이라도 융자를 받는 건데, 늘 아쉬웠습니다. 이제라도 공제회가 발족이 되어서 그간에 어렵게 생활해 오신 유공자들, 유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거리가 멀어서 창립대회에 참석은 못하지만 마음은 그곳에 가 있습니다.

창립회원 마당



다툼과 속임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서유상 (민족21 기자)

두르지 않고 묵직하게 한걸음씩 내디뎠던 민주화운동공제회가 정식으로 출범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유영표 위원장님을 취재하러 갔다가 위원장님의 권유로 회원이 된 특별한 인연이 있는지라 민주화운동공제회의 정식출범을 은근히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꽃피는 봄을 맞아 그 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싹을 틔우게 된다니 그동안 위원장님과 운영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유영표 위원장님으로부터 공제회의 정신이 어려울 때 조그만 정성이라도 모아 서로를 돕는 우리 전통의 두레와 향약정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부끄러운 액수이지만 선뜻 회원가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앞으로 공제회가 많이 번창하겠지만 금전이 있는 곳에 다툼과속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민주화운동 선배님들과 우리 모두가 짊어진 또하나의 즐거운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연대의 곳간에 쌀가마니가 하나 둘 쌓일 때,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도 하나하나 환히 켜지리라 믿습니다.

동지들의 열정으로 새로운 전진을

조명래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조직실장)

부독재 타도! 노동3권 쟁취! 평등세상 쟁취! 민주주의 만세! 지하골방에서, 거리에서, 감옥에서, 수십년씩 그리운 동지, 가족들과 생이별 당하면서도 삼천리 방방곡곡 피 끓는 함성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온몸으로 굴렸던 역사의 청춘들…

어느덧 머리엔 백발이, 얼굴엔 깊게 패인 주름이, 온몸은 고문의 흔적이 선연합니다.

역사와 민족은 당신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는 '내일을 여는 창' 입니다.

'아픈 다리 서로 보듬고' 아직도 굴려야 할 역사의 수레바퀴를 더욱 힘차게 굴려 나 갑시다.

동지들의 경험과 투혼, 열정으로 새로운 전진을 만들어 나갑시다. 민주화운동공제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국의 동지들은 모두 회원으로 가입합시다



심연식 (전남 곡성군 겸면 칠봉리)

○ 망의 민주주의를 위해 애써 헌신했던 많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민주화운동공제회가 설립되어 다시 옛 동지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니 참말 기쁘고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공제회가 오늘은 화려한 꽃이 아닐지라도 앞으로 풍부한 열매를 맺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동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공제회 회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회원은 어려운 회원을 위해서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어려운 회원들은 여유 있는 회원들에게 더 많은 힘을 몰아주어 나라와 국민에게 봉사하고 공제회원으로서 영예로운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민주화운동공제회는 큰 소리를 내면서 태어났습니다. 삼천리 고을고을로 퍼져 나아가 모든 국민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말 그대로의 민주화운동공제 회가 되어 줄 것을 간곡하게 바랍니다.

나는 공제회가 함께 애쓴 많은 회원들의 '밝은생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기인대회

"일제의 압제에 맞선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이 간난신고의 세월을 보냈듯이 민주운동가들의 배우 자나 그 자녀들에게 가난과 고통의 대물림이 나타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동 지들이 겪고 있는 어렵고 힘든 생활에 눈을 돌려



발기인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함세웅 신부

작은 힘이나마 한데 모아 상부상조할 수 있는 공제회를 결성하고자 한다."

민주화운동공제회가 2004년 12월 9일 발기인대회를 통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2004년 1월 초 '씨앗모임' 을 시작한 이후 근 1년만이었다.

이 날 발기인대회에는 박형규 목사, 함세웅 신부, 이창복 선생, 이소선 여사(전태일열사 모친) 등 300여 명의 발기인이 참석했다. 발기인으로 참여한 민주인사들은 모두 700여 명.

설립발기인들은 민주화운동공제회를 '함께 어울리는 민주동지들의 한마당'이자 '함께 만드는 희망의 밝은생활 공동체'로 규정하고 이를 천명했다.

임진택 회원(마당극 연출가)의 사회로 진행된 발기인대회는 유영표 준비위원장의 인사말, 함세웅 신부(민주화운 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창립총회 준비위원회 구성에 들어가 창준위원과 위원장단(위원장 유영표, 부위원장 선경식 이영순 최준영)을 선출했다. 창준위는 정관(안) 작성, 사업·예산(안) 수립, 교육·홍보활동, 조직 강화 활동 등 본격적인 창립총회 준비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날 발기인대회에서는 박정희 독재정권 비판으로 고문을 당하고 교직에서 쫓겨난 뒤 간암 말기로 고생하고 있다는 이영호 회원(경주 거주)을 돕기 위한 즉석모금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모아진 130여만원은 이 같은 사연을 눈물로 호소한 이회원의 부인에게 전달되어 참석자들의 가슴을 뿌듯하게 했다.

발기인대회의 뜨거운 열기는 2004 민주인사 합동송년회 자리로 이어졌다.



새로 선출된 창립준비위원들이 앞에 나와 인사하고 있다. 단상 정면에 게시된 현수막에 적힌 '함께 만드는 희망의 밝은생활 공동체' '한데 어울리는 민주동지들의 한마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선명하다

함께가자 우리 이길을





변수 기계 변경 (1997년 1997년 1

유영표 창준위원장이 이영호 회원의 부인에게 대회 중에 모금된 성금을

참석자들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합창하면서 희망의 밝은생활 공동체를 기약했다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이창복 발기인의 모습



제회만 믿습니다"대회에 참석한 발기인들의 모습이 진지하다



발기인대회장인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은 공제회에 대한 열망과 기대로 가득찼다



2004 민주인사 합동송년회 모습



기금마련 전시회





민주화운동공제회의 기금과 운영비 마련을 위한 미술품 전시회가 2004년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함세웅 신부, 한승헌 변호사, 명진 스님, 박형규 목사, 강만길 총장, 한명숙 의원, 천영세의원, 한화갑 의원, 이부영 전의원, 신경림 시인 등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후원회가 주최했다.

한국미술협회(미협)와 한국민족미술인협회(민미협) 중

견작가들이 공동 참여했으며, 김지하 시인의 '난' 시리즈, 곽석손 화백의 '나비', 하철경 '구름', 이두식 '도시의 서정', 송용 '종가집', 김순옥 '이과수폭포', 송상섭 '만추' 등 63명 작가의 작품 130여 점이 전시되었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서예 1점과 친필도자기 1점, 박형규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동양화 1점, 이석현 의원의 서양화 1점, 장영달 의원의 서양화 1점,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의 서양화 1점 등이 기증되어 함께 전시되었다.

민주화운동공제회는 공제회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기관과 인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억 2천여 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제회 창립준비에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한승헌 변호사(①)와 함세웅 신부(②), 곽석손 전 미협 이사정(③), 명진 스남(④)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한 인사들의 모습



이해찬 국무총리(왼쪽)가 전시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그림 1점을 구입했다



김지하 시인은 난초 그림 5점을 출품했다



유영표 위원장(오른쪽)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 유홍준 문화재청장(왼쪽)과 담소하고 있다 박계동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전시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선경식 홍보위원장(왼쪽)이 염동연 의원(가운데)에게 작품 설명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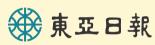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가운데)이 전시장을 찾아와 작품 2점을 구입했다



언론보도



민주화운동공제회 첫 기자회견(2004. 10.15)



생활폼 민주화인사 지원 공제회 설립

생활고를 겪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복지 증장 을 위한 '민주화운동공제회' (가칭)가 만들어질 예정》 '민주화운동공제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유영건 "1970, 80년대 학생운동 등을 포함한 민주화

지만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기 이들을 위해 공제회 창설을 추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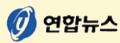
준비위에 따르면 공제회는 이르 대회를 거쳐 민법 제32조에 근거하 어지며 내년 3월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

준비위는 25~30일 서울 중구 정동 원 회 전시장에서 공제회 창립 기금마련을 계획. 조성된 기금의 1% 정도는 사회복지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다.

준비위 사무처 권희경 간사는 "공제회는 원 기여한 이들이 향약이나 두레처럼 상호부조를 를 도울 수 있는 생활공동체 형식이 될 것"이라 창립회원 3만명으로 시작해 앞으로 회원 10만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회 후원회에는 강만길(姜萬吉) 상지대 총 비롯해 김성수(金成洙) 성공회대 총장, 이부영(李富榮) 린우리당 의장, 한승헌(韓勝憲) 전 감사원장, 한화갑(韓和 甲) 민주당 대표 등 10여명의 인사가 참여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2004.10.5)



민주화운동 관련자 '공제회' 창설 본격화

1970~1980년대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등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지만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들이 직접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회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5일 '민주화운동공제회 준비위원회'(가칭)에 따르면 민 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기 위해 이달 말 기금마련을 위한 전시회가 열리는 등 '민주 화운 동공제회(가칭)' 창설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공제회 준비위는 시인 김지하씨와 소설가 황 석영씨, 화가 등으로부터기증받은 작품을 오는 25~30일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에 전시, 판매한다.

민주화운동공제회는 전시회를 통해 마련한 기금 중 1% 가량을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직/

만 강만길 상지대 총장과 김성수 성공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천영세 민 한승헌 전 감사원장, 한화갑 새천 V부 등 10여명으로 후원회도 구성

> 단법인 형태를 띠게 될 공제회 ·[대회를 거쳐 내년 3월 창립

은 내부적인 기준에 의해 에게 개방한다는 방침이 正是是我们,我想是是是是我们 是因对,我们是为一种时,是不是是可能是我们 ∖ 향후 10년내 10만명

V는 민주화운동 관 ᅦ 참여해 고초를 무립으로자녀 교 도 상당수"라

ARE OUT.

少 경향신문

'민주화운동 공제회' 만든다 내년 3월 창립총회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궁핍 한 삶을 살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스스로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제회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공제회 준비위원회(가칭)는 5일 1970~80년/ 대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剂 을 위해오는 12월 발기인 대회를 거쳐 내년 3월 창립총 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제회는 -일정 요건을 갖춘 회원들의 회비

- 시인 김지하, 소설가 황석영, 민족미술인연합/ 품전시회와 같은 수익사업
- 일반인들의 후원금 등으로 마련된 기금을/ 해 생활이어려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원을 할 예정이다.

회원 자격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침이다.

내부 정관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기 운동에 능동적으로 무관하게 과거 민 로 참여한 사람이라면 자체 심사를/ 다는 입장이다.

선근형기자 ssun@k

(02)773-7568 (02)7

1908年 1

अधारी: क्षेत्रीय: कष्तिय: क्षेत्रीय: कष्ति: क्षेत्रीय: क्षेत्रीय: क्षेत्रीय: क्षेत्रीय: क्षेत्रीय: कष्ति: क्षेत्रीय: कष्

PRESSian

70년대 민주투사들, 지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70년대 투사의 '오늘' 자료집 펴내

우리 사회를 두고 어떤 이는 '민주화된 사회'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직 멀었다'고 말하다. 하지만 모두들. 지난 70 · 80년대의 군부독재 시절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는 데는 동의하다

이처럼 '보다 민주화된 사회'의 밑거름이 된 사람들, 흔 · 공안기관에 끌려가 갖은 고초를 당하고, 사회에서도 ''라 질시를 받았기도 한 지난날의 '민주투사'들은 ₹ 얼굴로,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있을까.

> ♥ 사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 '사'들이 대거 권력의 핵심 실세로 등 따라서 일반 시민들은 '민주투사 √도 한다.

> > 실상을 정확히 조사한 ₹ 와중에 '민주화 **신주화운동 관련** ★료집에는 1970년 삼 분야에서 민주화 서떤 분야에서 활동을 는지 나아가 현재 경제 /리되어 있다.

운동에 참여했던 '수도권 √003년 11월24일부터 12월19 ♣은 달 20일까지 두차례 나눠 성됐다.

☞ 사료관장은 "시대적 대의에 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초 토 여전히 사회 저변에서 묵묵히 자 ∠ 평범한 참여자들의 삶은 여전히 제 고, 사회적 관심 또한 뒷전으로 밀려있 ·내경을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정된 모집단을 대상으로 에 이를 근거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서 차원의 조사를 위해서는 국가와 정부 그리 ·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르면 개인-가구소득은 학력과 민주화운동 투 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다. 즉 대졸 이상 학생운동 여한 경우가 고졸 이하 노동운동에 참여한 경우보다 훨씬 좋은 수입과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프레시안 (2004. 4.7)



언론보도

PRESSian

민주화운동공제회. 9일 발기인 대회 개최

지난 6월 발족한 '(가칭)민주화운동공제회(준)'이 9일 저녁 발기인대회를 연다. '민주화운동공제회(준)'는 과거 60년대~80년대 기간동안 굽기드레지키에 마기 미종

동에 참여했던 사람들간에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민주화운동공제회(준)'는 동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회원 요건을 보면 ▲민주화운동 직계존비속 ▲60년대부터 80 동적으로 참여한 자 등이다. 립총회 때까지 3만명을 회원 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제회 사업은 ▲소속 회 야의 전문가들과 연결해주는 안정자금, 학자금 대출과 같 급과 같은 상호부조사업 ▲ 이다.

이들 사업을 위한 공제회 으로 내는 가입비, 매달 내 각 단체로부터의 지원금과

참석한다고 공제회측이 밝혔 식 출범한다. 언론계 · 시민단체 등 다양

호사.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 성되어 있다.

김경락 기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우리들 스스로가 상부상조

민주화운동공제회 유영표 준비위원회 위원장

함께 어울리는 민주동지들의 한마당

함께 어둡니다 단구하시를 건 만당 지난 6월 반족한 '민주화운동중세회' 가 12월 9일 저녁 받기인 대회를 얻었다. '민주화운동중세회' 는 60년대-80년대 기간동안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간의 상부 상조를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민주화운동 에 참여했다가 사회 진출이 늦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에 넘어졌다가 가의 근물이 듯하지 경제이으로 이더움을 취고 있 거나 고문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 등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당시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이 주축이 돼 설립을 추진 중

어머니)를 비롯해 임기란 민가형 고문 등 각계인사 270여명 비롯 753명이 참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발기선언문을 채택해 "일제 이 아래에 만서 도립우두가든과 그 호소등이 가나시고의 세월은 보냈듯이 민주화운동가들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게 가난과 고 용의 대환원이 나타날 가능성이 핥아지고 있습니다. 다고 말하면 작은 힘들이나마 한테 모아 상부상조한 수 있는 공제회를 결성하 자고 밝혔다. 또한 공제회는 함께 이울리는 민주동지들의 한마당 이며, 함께 만드는 희망의 밝은 생활 공동체임을 강조한 뒤, 형편 이 나온 사람은 나온 대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공 제회의 깃방 아래 참여해 중 것을 호소했다

꼭 해야 할 일, 꼭 해내야 할 일

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향약, 두레, 계 등의 조직을 통 해 서로 돕고 시는 지혜를 보여줬었습니다. 민주화운동공제회는 민주화우등에 참여했던 우리들 스스로가 상부상조해야 한다는

항계례

민주화운동 공제회' 발기인대회

1960~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이 생활

초기에는 기금 규모가 많지 인 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원웅・김재홍 생사업 보다는 기금의 안정 열린우리당 의원,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및 각종 기금확대방안 마련이 박종철씨의 아버지 박정기씨, 고 이한열씨의 어머 이날 오후 4시 한국기독; 심씨 등 민주화 운동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는 7백4(는 내년 2월께 창립총회를 열고 사단법인 등록을

대 총장, 명진 스님, 박형규 (5천원)에서 100구좌까지 개설할 수 있다.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 현 람들 중 지금은 월 수입 100만원 미만으로 🗸 대표, 함세웅 신부(민주화운 나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상당히] 옛 동료들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돕자는 게 고 말했다.

> 주요 발기인은 이해찬 국무총리, 김근태 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부영 열린우리 달 ·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 원희룡 · 박 나라당 의원, 한화갑 민주당 대표, 박형규 부, 김성수 성공회 주교, 김세균 서울대 사 700여명이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

문화일보

'민주화운동 공제회'창립 박차 내일 700여명 발기인대회

1960~80년대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인시들이 생활고 를 겪고 있는 동료들을 돕기위해 추진해온 민주화운동공 를 위고 있는 항요를를 됩기된해 우신해는 반두와군등을 제회'가 창립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 창립준비에 나선다. 으로 내는 가입비, 매달 내 인 창설 눈마이 되죠...
민주화운동공제회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이탈 기가 단체로부터의 지원금과 의 민주화운동공제회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이탈 기가 단체로부터의 지원금과 의 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공제회 설립을 위 되어도 사회진출이 늦어 상당수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 기가 구구가 많지 인 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원웅・김재홍 만경과 복지증지은 이는 장상당수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 기가 가지를 받아 기가 되었다. 이 기가 되 호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유영표 준비위원장은 "과거 민주 하네도 사외신물이 롯어 상당구가 어려운 생활을 이내 저다 이들을 포함해 당시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생 나 바 이 분들 포함에 당시 포함에 참여했던 먼지들의 함 활인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서로 돕는 생활공동체를 지향 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하고 있다고 되시를 려왔다. 700여명이 참여한 발기인 명단에는 각계인사들이 참여 하고 있다.

다고 있다. 주요 인사로는 정부에서 이해찬 총리, 김근태 장관, 정 식 출범한다.
공제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15 영숙 원혜영 열린우리당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장영달 한 안경률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 손하규 경기지사, 원희룡 원, 한화갑 기호이 만든 의원, 천영세 노회차 미드만 의원 설론계·시민단체 등 다양, 상세외 외코드— 함여했다. 공제회의 후원회는 강만집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며, 한 시 공제회의 후원회는 강만집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며, 한 시 (5천원)에서 100구좌까지 개설할 수 있다. (5천원)에서 100구좌까지 개설할 수 있다. 세웅 신부, 법조계는 이토로 종교계는 박형규 모기 의 안 영혈 박계승 안나다 당 그런, 선생세 포외산 필포당 의원, 한화갑 김홍일 민주당의원, 종교계는 박형규 목사 함 현, 안와답 답충할 친구당되면, 중교세는 학생규 녹사 법 세용 신부, 법조계는 이돈명 한승현 변호사등과 노동 농민 여성 하계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사용 약세 인사들이 나무 함여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공제회는 회원자격을 과거 민주화운동에 참 인가와군중중세외는 외원사석을 과거 인구와군중에 참 여했던 인사와 직계 존비속으로 폭넓게 잡고 있다. 가입비 여 있던 인사와 식계 쓴미속으로 똑넓게 않고 있다. / Figure 1만원이상, 월부담금 1~100계좌(계좌당 5000원)를 약정하 변형인상, 결구되급 1~100세와(세와당 5000원)를 약성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민주화운동공제회는 회원에게 연금 면 외원이 될 구 있다. 한구외단호증세외단 외원에게 연급 지급, 신용대출등 상호부조 사업과 의료비, 장학금 지원등

추가수영사업을 계획이고 있다. 준비위 관계자는 "회원 가입 대상자가 10만명이 될 것 로마위 변계사는 외천 / Y입 내장사가 10년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창립때까지 회원 5000명 이진우기자 jwlee@munhwa.com (2004. 12.8)

공제회게시판

[회원이 되시려면]

가입비와 적립부담금 구좌를 약정하시고 회원가입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회원가입비: 가입시 1만원 이상(제한없음) 납부
- 적립부담금: 1구좌(5천원) 이상 최대 100구좌까지 (월 기준)

[가입 방법]

- 홈페이지(www.minjugongje.org) -> 회원 가입
- '회원가입서'를 작성하시어 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주십시오 전화 02-712-5811(대) 팩스 02-712-5813

[적립부담금/가입비 납입 방법]

■ CMS 출금 이체

CMS 출금이체는 기존의 자동이체 방식(직접 은행에 가서 신청)과는 달리 회원의 거래은행과 계좌번호, 예금주를 알려주시면 금융결제원에서 일정한 날짜에 지정된 통장에서 약정하신 적립부담금을 출금하는 방식입니다

■ 인터넷 자동이체 설정 혹은 직접 납입 우리은행 1005-100-920672 예금주 : 민주화운동공제회

〈찾아오시는 길〉

